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65

발의연월일: 2023. 4. 11.

발 의 자:이성만・박성준・이형석

임호선 · 한준호 · 박찬대

강득구 • 이동주 • 문진석

민병덕・박 정・조오섭

유기홍 • 오영환 • 김홍걸

남인순 • 이학영 • 최기상

유미향 • 박주민 • 허종식

한정애 · 김정호 의원

(239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이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조차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조 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 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회 의 결을 통해 조사가 요구된 재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여 공 정한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난사고원인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고원인조사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 나. 대통령령에 따른 재난, 국무총리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재난, 국회 의결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사고원인 조사위원회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를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및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보고하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 다.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함(안 제69조제10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사고조사(제34조 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 한다. 이하 "재난사고원인조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사고원인조사
- 2.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 3.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

다.

-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위촉한다.
- ⑥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말한다)
- 2. 대학에서 재난·안전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 4. 재난·안전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 5. 재난·안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 ·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 6.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 ⑦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사무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본다.
- ⑧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이하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이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난사고원인조사 단을 편성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구성된 단장 및 단원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편 성하여야 한다.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 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국무총리가 체계적인 재 난사고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3. 국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요구된 재난
- ⑨ 조사위원회는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의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및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①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8항에 따른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의 권한·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69조제9항"으로, "재난원인 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를 "재난사고원인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9조제5항"을 "제69조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 •분석 • 평가(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 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 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 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 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 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사고조사(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사고원인조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난사고원인조사에 대하여 는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사고원인조사
- 2.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 3.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

 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

 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난
-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 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 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 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

는 업무

- ④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 원으로 한다.
-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령이,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위촉한다.
- ⑤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각 교 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및 비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말한다)
- 2. 대학에서 재난·안전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자
-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 4. 재난・안전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 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⑦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재난·안전 분야에서 10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 6.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 ⑦ 「정부조직법」 제3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사고원인 조사에 관한 사무는 조사위원 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는 것으 로 본다.
- ⑧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 가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이하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이라 한 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재난사고원인조사 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 에는 반드시 재난사고원인조사 단을 편성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 단을 편성하여 재난사고원인조 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국 회의 의결을 통하여 구성된 단 장 및 단원으로 재난사고원인

조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 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 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난
-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국무총리가 체계적인 재난사고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3. 국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 의결을 통하여 재난사고원 인조사가 요구된 재난
- ⑨ 조사위원회는 재난사고원인 조사단의 재난사고원인조사 결 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 각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 난사고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 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 1의2. (생략)
-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 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 3. <u>제69조제5항</u> 후단에 따른 개 3. <u>제69조제10항</u>-----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 4. (생략)

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	<u></u> 릴과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u></u> 회의
<u>구성·운영 및 제8항에</u>	따른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의 권	<u> </u> 한 •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4) ①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69조제9항	H난사
고원인조사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